
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20274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6. 7.

제안자 :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의안명	대표발의자 (제출자)	발의일자 (제출일)	심사경과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1135호)	정부	2024.6.28.	제417회국회(임시회) 제1차 전체 회의(2024.08.26.) 상정 후 제안설 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16724호)	윤준병의원	2026.2.10.	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(2026.02.20.)

가. 제434회국회(임시회) 제2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(2026.4.29.)

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각
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.

나. 제435회국회(임시회)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(2026.5.12.)에

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
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해양수산법안심사
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·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에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를 추가하고,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규정되어 있는 조업상황·어획실적·전재량 관련 보고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며, 현행법 제104조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96조, 제104조, 제112조).
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6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“「양식산업발전법」 및 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”을 각각 “「양식산업발전법」, 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”으로 한다.

제10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 제18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제112조제4항제11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112조제4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6조(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)	제96조(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)
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① ----- --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그 밖에 이 법, 「수산자원관리법」, 「어장관리법」, 「양식산업발전법」 및 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	7. ----- ----- 「양식산업발전법」, 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----- -----
② 시·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·도수산조정위원회가 시·군·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도 수행한다.	② ----- -----.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그 밖에 이 법, 「수산자원관리법」, 「어장관리법」, 「양식산업발전법」 및 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	8. ----- ----- 「양식산업발전법」, 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-----

③ ~ ⑤ (생 략) 제104조(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) ① (생 략) ②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제51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업상황·어획실적·전재량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. ③ (생 략) 제112조(과태료) ① ~ ③ (생 략)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~ 10. (생 략) 11. 제10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⑤ (생 략)	-----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제104조(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 제18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 ③ (현행과 같음) 제112조(과태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. 1. ~ 10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⑤ (현행과 같음)
---	--